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775
----------	-------

발의연월일 : 2026. 7. 6.

발 의 자 : 김 현 · 김 윤 · 임오경
이성윤 · 윤준병 · 조계원
박해철 · 윤후덕 · 황정아
이기현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발매된 음원의 가사 등이 선정적이거나 혐오적인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청소년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음.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설치된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에서는 이를 사후적으로 심의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단하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유해매체물이 유통되는 문제가 있고, 현행법의 미비점을 악용해 청소년이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음원을 발표하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음반등유통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음반등유통업자로 하여금 음반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게 하고, 유해한 음반등의 제작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해당 음반등의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음반등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음반등유통업자로 하여금 음반등을 유통하기 전에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유해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을 제작자에게 알려주도록 함(안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등).
- 나. 음반등유통업자의 검사 결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음반등의 유통 시 그 제작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해당 음반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음반등유통업자에게 시정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제3항 및 제27조제2항 신설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제2절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청소년의 보호) 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 중 음반등을 유통하는 자(이하 “음반등유통업자”라 한다)는 음반등을 유통하기 전에 해당 음반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기준은 「청소년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심의 기준을 준용한다.

② 음반등유통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음반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음반등이 「청소년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을 제작자(음악을 부르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한 음반등을 유통하는 경우 음반등유통업자는 음반등 제작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그 제작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해당 음반등의 유통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체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한 음반등의 목록과 결과의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음반등유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음반등유통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음반등유통업자에게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음반등을 검사하지 아니한 때
2. 제2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음반등을 유통한 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26조의2(청소년의 보호) 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 중 음반등을 유통하는 자(이하 “음반등유통업자”라 한다)는 음반등을 유통하기 전에 해당 음반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기준은 「청소년보호법」 제9조에 따른 심의 기준을 준용한다.</u></p> <p><u>② 음반등유통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음반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음반등이 「청소년보호법」 제7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을 제작자(음악을 부르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u></p> <p><u>③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한 음반등을 유통하는 경우 음반</u></p>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생략)

<신설>

등유통업자는 음반등 제작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그 제작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해당 음반등의 유통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체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한 음반등의 목록과 결과의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음반등유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음반등유통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음반등유통업자에게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 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할 수 있다.

1.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음반등을 검사하지 아니한 때

2. 제2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음반등을 유통한 때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